##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65

발의연월일: 2020. 8. 4.

발 의 자:서삼석·신영대·윤재갑

임오경 · 김철민 · 이형석

오영환 · 맹성규 · 윤후덕

이개호・최인호・소병훈

송갑석·장경태·주철현

정청래 · 천준호 의원

(179]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.

국가균형발전정책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시 정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과의 상생 효과는 미미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이전 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. 또한 최근 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이에 수도권 인구분산 및 지방·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혁신도시, 산업위기대 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18조제5항 신설). 법률 제 호

##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대상공공기관 및 신규 공공기관의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혁신도시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	제18조(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
혁신도시 활성화) ① ~ ④ (생	혁신도시 활성화) ① ~ ④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
	전대상공공기관 및 신규 공공
	기관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
	혁신도시, 산업위기대응특별지
	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
	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